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'구직자취업촉진법'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0. 12.

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포 항 지 청 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및제6항, 제29조제1항제9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 내용	
이*미 (81.4.4.)	경상북도 경주시 한빛길6번길22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-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(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3회 이상 미제출) - 연락 두절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기간 3년 적용	폐문부재 등

4. 공고기간: 2026. 10. 12.~2026. 10. 26.(15일간)
5. 의견제출방법: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(경주고용센터 6층 국민취업지원팀) 또는 팩스(0503-8803-0531)
6.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+센터 성지영(☎ 054-778-250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